

의안번호	제 87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58 회)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종갑 의원외 10
발의연월일	2007년 3월 6일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	----

발의연월일 : 2007년 3월 6일

발 의 자 : 박종갑의원 외 10

제안이유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9일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통합되었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단통합에 따라 지역특화센터의 사업추진 근거인 「산업발전법」 추가(안 제1조).
- 재단통합에 따른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
 1.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 개발 사업 →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 → 지역 전략산업 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
 3.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 →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육성·지원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 → 전자정보부품 육성·지원
 5.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 → 실버바이오산업 육성·지원
 6. 시험생산사업 → 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위탁 사업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불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불임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 를 “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 테크노파크 ” 를 “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이하 “ 테크노파크 ” 라 한다)로 하고, “ 민법 ” 을 “ 「민법」 ”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지역 전략산업 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
3.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육성·지원
4. 전자정보부품 육성·지원
5. 실버바이오산업 육성·지원

6. 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
7.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위탁 사업
8. 그 밖에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재단법인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p>		<p>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 및 산업기 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을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이하 테크 노파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 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지역산 업진흥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 파크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및 운영) 테크노파크는 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 법인 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충북테 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 단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 개발 사업 2.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 3.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 		<p>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지역 전략산업 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 3.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육성 · 지원 4. 전자정보부품 육성 · 지원 		

현행	개정안
<p>5. <u>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사업</u></p> <p>6. <u>시험생산사업</u></p> <p>7.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u></p> <p>8. <u>그 밖의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제4조 ~ 제10조 (생략)</p>	<p>5. <u>실버바이오산업 육성·지원</u></p> <p>6. <u>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u></p> <p>7. <u>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위탁 사업</u></p> <p>8. <u>그 밖에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제4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는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발전법

제8조(지역진흥산업의 시행)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